

“회선재판매 협상추이 감안 신중히 검토” WTO 기본통신협상 설명회 Q&A

WTO 기본통신협상 설명회가 지난 8월 1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. 이 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을 비롯, 주현정 부이사관, 강문석 서기관, 그리고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최병일 연구원이 참석해 그간의 협상진행 상황과 외국의 요구, 우리의 대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일반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다. 다음은 그 질의응답의 주요내용이다.

Q : 규제기관의 독립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은?

A : '95. 7. 4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계, 통신관련법령개정시 검토될 것입니다.

Q : 음성 공·전·공 접속 허용요구와 관련 시내외 요금격차 해소 및 접속부가료 등의 도입계획은?

A : 요금구조의 원가근접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온 과제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.

Q : 현 상호접속기준(안)은 국내경쟁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경쟁촉진을 위한 현재의 신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외개방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

A : 공정한 상호접속제도의 마련은 국내통신시장 경쟁촉진에 따라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.

Q : WTO 정부대표단 구성 및 선정기준은?

A : 정보통신부 담당자를 주축으로 관계부처가 참석하고 있으며 KISDI 전문연구원이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

Q : 회선재판매 허용계획은?

A : NGBT 협상추이를 보아가면서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.

Q : 사업자수 제한 철폐방침 및 외국인 지분 완화계획은?

A : 현행 RFP 방식에서 수시신청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나 신청만 하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, 지분제한 완화에 대하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.

Q : 대외개방에 앞서 회계분리기준에 의한 정부의 보완방침은?

A : 회계분리규정은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나 한국통신에서도 자발적인 분리노력이 필요합니다.

Q : 최초 양허안을 오는 8차 협상회의에 제출할 것인지와 양허안의 공개 용의는?

A : 양허안에 대한 기본방향은 발효할 것이나 협상전략상 원안의 공개는 곤란합니다.

Q :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운 통신사업자 선정시 현행 법의 기간통신사업자의 타기간사업자 지분소유 금지조항은 기존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아닌지?

A : 올해 허가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.

Q : 대외개방에 맞추어 보편적 서비스 기금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닌가?

A :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WTO NGBT에서도 계속 논의중이며, 경쟁도입으로 보편적서비스가 해손되지 않도록 구체화 될 것입니다.

Q : 재벌 등 대기업, 이와 제휴한 외국기업, 한전과 같은 자가 통신설비 보유자 등이 무분별하게 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통신사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?

A : 자가 통신설비를 보유한 공기업의 통신사업 참여의 경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허용한 예가 있습니다.

Q : 경쟁사업자의 가입자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?

A : NGBT에서도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된 것이 없으며 현재 협의중에 있으나, 공정경쟁 차원에서 요금정산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은 필요할 것입니다. ●